

경기도 공고 제2020 - 1621호

-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 및 신체검사·인(적)성 검사·서류접수 일정 공고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 및 신체검사·인(적)성 검사·서류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1 체력시험 합격자

○ 합격자 현황 : 1,078명

구분 \ 분야	총계	공개경쟁			경력경쟁											
		소계	소 방		소계	선박 기관사	화학	건축	화재조사 및 소방특별 조사	구급		구조	정보 기술	정보 보안	통계 조사 분석	자동차 운전
			남	여						남	여					
인원	1,078	668	645	23	410	4	11	10	85	98	78	96	5	1	2	20

○ 합격자 명단 : 【붙임1 참조】 ※ 합격자 현황은 도핑테스트 결과 미 반영됨.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2 신체검사

○ 기 간 : 2020. 8. 31.(월) ~ 9. 4.(금) 【5일간】

○ 장 소 : 3개소 【붙임2 참조】

- 아주대학교병원(수원시 영통구 소재) : 검사비용 55,000원
- 동수원병원(수원시 팔달구 소재) : 검사비용 55,000원
- 의정부백병원(의정부시 소재) : 검사비용 40,000원

※ 3개소 지정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3개소 중 1개소의 병원만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대 상 : 1,091명

분야 구분	총계	공개경쟁			경력경쟁													
		소 계	소 방		소 계	선박 기관사	화 학	예 방	건 축	화재조사 및 소방특별 조사	구급		구 조	정보 기술	정보 보안	통계 조사 분석	자 동 차 운 전	심 리 상 담 사
			남	여							남	여						
인원	1,091	668	645	23	423	4	11	5	10	85	98	78	96	5	1	2	20	8

-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반명함 사진(3×4, 2매), 검사비용(응시자 부담), 마스크
- 검사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검사 실시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 3 참조】
- ※ 병원별 검사시간이 상이하고, 신체검사 및 검사 결과서 발급에 일정기간이 소요 되므로 응시자는 원하는 지정 병원에 사전 문의 후 예약 및 검사실시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 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신체검사)에 따라 신체검사 후 '신체검사서'의 합격여부로 결정
- 불합격 판정기준 및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3」 ⇒ 【붙임 4 참조】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별표 5」 ⇒ 【붙임 5 참조】
- 복 장 : 남자 - 단추 없는 면티 상의 착용 권장, 여자 - 자유복
- 합격자 발표 : 불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인(적)성 검사

- 기 간 : 2020. 8. 31.(월) ~ 9. 3.(목) 【4일간】
- 장 소 : 경기도소방학교 종합훈련장 건물 내 3개소 【붙임 6 참조】
- 대 상 : 1,091명

분야 구분	총계	공개경쟁			경력경쟁														
		소 계	소 방		소 계	선박 기관사	화 학	예 방	건 축	화재조사 및 소방특별 조사	구 급		구 조	정 보 기 술	정 보 보 안	통 계 조 분	계 사 문 전	자 동 차 운 전	심 리 상 담 사
			남	여							남	여							
인원	1,091	668	645	23	423	4	11	5	10	85	98	78	96	5	1	2	20	8	

- 검사방법 : 집합 검사(OMR답안지 작성, 소요시간 90분)
 ※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면접위원에게 제공
- 검사비용 : 경기도 지원 (응시자 부담 없음)
- 등록장소 및 시간 : 시험당일 3개조 2회(오전·오후) 운영
 - 등록장소 : 경기도소방학교 종합훈련장 건물 내 3개소 【붙임 6 참조】
 - 등록시간 : 오전 조 08:30 ~ 09:00 / 오후 조 13:30 ~ 14:00
-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 마스크
- 응시분야별 세부일정

일 자	등록시간	조	응 시 분 야	응시번호	인 원
	총 계				1,091명
8. 31. (월)	소 계				276명
	08:30 ~ 09:00 (오전)	1조	· 소방(남) 46명	101010007 ~ 101020462	138명
		2조	· 소방(남) 46명	101020464 ~ 102020851	
		3조	· 소방(남) 46명	102020856 ~ 103021129	
	13:30 ~ 14:00 (오후)	1조	· 소방(남) 46명	103021131 ~ 103021460	138명
		2조	· 소방(남) 46명	104021464 ~ 104021738	
		3조	· 소방(남) 46명	104021739 ~ 105022022	
	소 계				276명
9. 1. (화)	08:30 ~ 09:00 (오전)	1조	· 소방(남) 46명	105022027 ~ 106022276	138명
		2조	· 소방(남) 46명	106022281 ~ 107032664	
		3조	· 소방(남) 46명	107032673 ~ 108142991	
	13:30 ~ 14:00 (오후)	1조	· 소방(남) 46명	108153014 ~ 513025781	138명
		2조	· 소방(남) 46명	513025797 ~ 514026037	
		3조	· 소방(남) 46명	514026038 ~ 514026244	

일 자	등록시간	조	응 시 분 야	응시번호	인 원
9. 2. (수)	소 계				267명
	08:30 ~ 09:00 (오전)	1조	· 소방(남) 45명	514026249 ~ 515026519	133명
		2조	· 소방(남) 44명	515026538 ~ 516076842	
		3조	· 소방(남) 4명 · 소방(여) 23명 · 예방 5명 · 건축 10명 · 통계조사분석 2명	516076846 ~ 516146895 208023092 ~ 616147027 309043365 ~ 717047044 309053369 ~ 717057049 311124520, 718127601	
	13:30 ~ 14:00 (오후)	1조	· 화재조사 및 소방특별조사 45명	309063403 ~ 412064687	134명
		2조	· 화재조사 및 소방특별조사 40명 · 선박기관사 4명 · 정보보안 1명	412064688 ~ 818067651 309013319 ~ 717017032 311114514	
		3조	· 화학(사) 11명 · 정보기술 5명 · 자동차운전 20명 · 심리상담사 8명	309033332 ~ 818037637 311104488 ~ 718107597 311134523 ~ 718137629 412145408 ~ 818147897	
9. 3. (목)	소 계				272명
	08:30 ~ 09:00 (오전)	1조	· 구급(남) 46명	309083656 ~ 310084034	136명
		2조	· 구급(남) 45명	310084040 ~ 717087364	
		3조	· 구급(남) 7명 · 구급(여) 38명	717087374 ~ 717087392 412084773 ~ 412085208	
	13:30 ~ 14:00 (오후)	1조	· 구조 46명	310094114 ~ 311094380	136명
		2조	· 구조 45명	311094389 ~ 718097557	
		3조	· 구급(여) 40명 · 구조 5명	412085238 ~ 818087876 718097561 ~ 718097574	

4 서류접수[전형]

- 기 간 : 2020. 8. 31.(월) ~ 9. 3.(목) 【4일간, 인(적)성 검사 시 병행 실시】
- 장 소 : 경기도소방학교 종합훈련장 건물 내 3개소 【붙임 6 참조】
- 대 상 : 1,091명

분야 구분	총계	공개경쟁			경력경쟁														
		소 계	소 방		소 계	선박 기관사	화 학	예 방	건 축	화재조사 및 소방특별 조사	구급		구 조	정 기 보 술	정 보 안	통 계 조 분	계 사 석	자 동 차 운 전	심 리 상 담 사
			남	여							남	여							
인원	1,091	668	645	23	423	4	11	5	10	85	98	78	96	5	1	2	20	8	

- 제출서류 : 【붙임 7, 8 참조】
 - 발급 기준일 : 서류접수 최종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제 출 방 법 : 분야별 서류를 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해당기간에 본인이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 당일 분야별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부족한 서류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제출
- 합격자 발표 : 불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서류전형 추후 별도 시행

5 응시자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대리 검사자 등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본 일정 공고는 코로나19 정부 방역정책 또는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https://119.gg.go.kr>) 「알림마당」의 「고시/공고」란 및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s://119.gg.go.kr/academy>) 「시험정보」의 「신규채용 / 공고·고시」란에 공고(공지)합니다.

□ 신체검사 유의사항

- 응시자는 경기도에서 지정 한 종합병원(3개소) 중 1개소에서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정밀검사(재검사) 포함]는 실시한 병원에서 일괄 경기도소방학교로 제출하니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검진병원이 다른 건강검진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고 즉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기간 중 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 등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검사당일 해당병원에서 접수를 마친 후 신체검사에 임하여 주기 바랍니다.
- 검사당일 최소 8시간 전부터 신체검사 종료 시까지 공복(음식물, 약물, 물, 담배, 껌, 커피 등 금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색각 이상자의 경우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개인병원 제외)에서 아노 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사전 예약 실시하여 결과지를 신체검사 실시 병원에 차질없이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하기를 바랍니다.
- 검사 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이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검사병원에서 문진(설문조사 포함) 등 진료 시 허위 답변(작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당해 시험 불합격 처분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성 검사 유의사항

- 응시자는 해당일자에 시간 엄수하여 등록(경기도소방학교 종합훈련장 건물 내) 하여야만 응시가 가능(**일자 및 시간변경 불가, 등록시간 이후 입장 불가**)하며, 등록을 마치고 서류접수에 필요한 개인별 구비서류를 제출 한 후 인(적)성 검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성 검사의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써 미 응시 할 경우 불합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접수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연락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즉시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 할 수 있고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류접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면허)증 사본 이외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초본, 법원 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시험장소에 출입 전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 개인 위생 용품 등을 준비하기 바라며,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장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보건 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단순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진학어플라이 원서 접수 사이트」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자진 신고하기 바랍니다.
※ 필요할 경우 보건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화·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본인의 해당 시험 일정에 응시가 불가합니다.
단,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자가격리자 등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사전 신청 시 시험기관에서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일 및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자 등 자진신고 안내 ★

- 신고기간 : 2020. 8. 26.(수) 09:00 ~ 8. 28.(금) 12:00
- 등록방법 : 「(주)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사이트」 자진신고시스템에 기록
- 기록내용 : 응시자 본인의 자가격리 여부, 건강 상태, 출입국 이력 등을 사전에 등록
⇒ 결과에 따라 **별도 지정된 시험일 및 별도 장소 등에서 시험 응시**
- ※ **응시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① 자가격리자 시험 신청서【붙임 14】 ② 보건소장이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을 경기도소방학교 인재개발팀으로 팩스(031-280-8513) 발송 후 유선 통보(031-329-0321~5) 하기 바람.
- ↳ 장소 등 시험응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별 유선 통보(예정)

- 상기 신청 기간 이후는 접수를 받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신고기간 이후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응시자는 본인 시험일 전까지 상기 서류(①,② 2가지)를 이메일(joon6@gg.go.kr)로 제출 하기 바랍니다.

-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수험생 등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 소독 및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감염 의심 여지(발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가 있는 수험생은 마지막 날 분리 응시
- 시험 시작 전 유증상자 등은 마지막 날로 조정하여 시험이 진행되며,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기 바랍니다.
- 시험장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바랍니다.
-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 등이 즉시 퇴실조치 할 예정입니다.

- ▷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벗는 경우
 - ▷ 그 밖에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험응시 불가한 응시생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 붙임 1.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 (응시번호순) 1부.
2. 신체검사 장소 안내 1부.
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6. 인(적)성 검사 및 서류접수 장소 1부.
7. 서류접수(전형) 제출서류 안내 1부.
8. 서류접수(전형) 증빙서류 목록 1부.
9.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비율 1부.
10. 경력(재직) 증명서 1부.
1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12.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업체 폐업용) 1부.
13.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1부.
14. 자가격리자 시험 신청서 1부.
1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응시표 출력 : (주)진학어플라이(<http://ggfire.jinhakapply.com>) / 전화 : 1544-7715
- 기타 문의 : 경기도소방학교(<https://119.gg.go.kr/academy>) / 전화 : 031) 329-0321~5

붙임 1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

○ 응시번호순 : Excel 첨부파일 참조

붙임 2

신체검사 장소 안내 : 찾아오시는 길은 해당 병원 홈페이지 참조

📍 **아주대학교병원 별관(웰빙센터) 4층 건강증진센터 ☎ 1688-2118 → 2번**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원천동 산 26-6)]



📍 **동수원병원 건강증진센터 ☎ 031-210-0285, 0777, 0294**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우만동 157-7)]



📍 **의정부백병원 지하 1층 건강증진센터 ☎ 031-843-8383, 856-8111**

↳ [경기 의정부시 금신로 322(신곡동 519-11)]



붙임 3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 눈	좌: 우:	색 신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색 각)	교정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 부 X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 합 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 격 여 부	[] 불 합		
	[]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구 분	내 용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 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별표 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붙임 6

인(적)성 검사 및 서류접수 장소

※ 이용 교통수단 및 거리 등 사전에 필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봉명리) (☎ 031-329-0321~5)



소방학교 입구

붙임 7

서류접수(전형) 제출서류 안내

모집분야		공통사항	개별사항
공개 경쟁	소방 (소방사)		9. 가산특전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 1부. * 3번과 중복 시 생략가능
경력 경쟁	선박기관사 (소방사)	1. 기본증명서 1부.	9. 경력증명서 원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소득금액증명원 1부. 13. 기관사(1급~5급)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14. 해기면허사항 1부. 15. 근로계약서(해당자) 1부.
	화학 (소방사)	2. 운전경력증명서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9. 최종학력(학위)증명서 1부. 10.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 1부 및 본인 졸업학교와 타 학교 비교 공문(해당자) 각 1부.
	예방 (소방장)	4. 주민등록표 초본 1부. 5.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서 1부. - 등록 장소에서 배부	경력 응시자 9. 경력증명서 원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소득금액증명원 1부. 1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분야) 1부. 14. 근로계약서(해당자) 1부.
		6. 병적증명서(해당자) 또는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 1부.	학위 응시자 9. 최종학력(학위)증명서 1부. 10.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 1부 및 본인 졸업학교와 타 학교 비교 공문(해당자) 각 1부.
	건축 (소방사)	7.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해당자) 1부. 8. 의사상자 등 증명서류 (해당자) 1부.	9. 경력증명서 원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소득금액증명원 1부. 1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분야) 1부. 14. 근로계약서(해당자) 1부.
	화재조사 및 소방특별 조사 (소방사)		경력 응시자 9. 경력증명서 원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소득금액증명원 1부. 1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분야) 1부. 14. 근로계약서(해당자) 1부.
			학위 응시자 9. 최종학력(학위)증명서 1부. 10.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 1부 및 본인 졸업학교와 타 학교 비교 공문(해당자) 각 1부.

모집분야		공통사항	개별사항
경력 경쟁	구급 (소방사)	1. 기본증명서 1부. 2. 운전경력증명서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주민등록표 초본 1부. 5.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서 1부. - 등록 장소에서 배부 6. 병적증명서(해당자) 또는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 1부. 7.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해당자) 1부. 8. 의사상자 등 증명서류 (해당자) 1부.	9. 경력증명서 원본 1부.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1. 소득금액증명원 1부. 12.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13. 근로계약서(해당자) 1부.
	구조 (소방사)		9. 군 경력증명서 원본 1부.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1. 소득금액증명원 1부. 12.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해당자) 1부. 13. 자격표, 병적증명서, 군부대 경력증명서, 처별내역 조회 확인서 중 1부.(징계사항 표기되도록 발급)
	정보 통신 (소방사)		9. 경력증명서 원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소득금액증명원 1부. 1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분야) 1부. 14. 근로계약서(해당자) 1부.
	정보 기술		9. 경력증명서 원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소득금액증명원 1부. 1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분야) 1부. 14. 근로계약서(해당자) 1부.
	정보 보안		9. 경력증명서 원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소득금액증명원 1부. 1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분야) 1부. 14. 근로계약서(해당자) 1부.
	통계조사 분석 (소방사)		9. 경력증명서 원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소득금액증명원 1부. 1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분야) 1부. 14. 근로계약서(해당자) 1부.
	자동차 운전 (소방사)		9. 경력증명서 원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소득금액증명원 1부. 13.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 14. 근로계약서(해당자) 1부.
	심리상담사 (소방교)		9. 경력증명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2. 소득금액증명원 1부. 13. 최종학력(학위)증명서 1부. 14.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 1부 및 본인 졸업학교와 타 학교 비교 공문(해당자) 각 1부. 15. 근로계약서(해당자) 1부.

【제출서류 세부 안내사항】

《 공통 제출서류 》

① 기본증명서 1부.

- 응시자 본인기준, 상세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뒷번호는 본인만 공개) 모두 기재

②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경찰서 방문 발급 또는 경찰 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및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면허 취득 후 “전체 경력” 으로 설정 발급(면허이력, 법규위반, 사고내역 등 전체 포함)

③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A4 용지에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앞면과 뒷면을 1장으로 복사하여 제출(단, 자동차 운전분야는 반드시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제출)

④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과거 주소변동 상세이력 기재 및 병적사항이 전체 나오도록 제출

⑤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1부.

- 경기도소방학교 등록 장소에서 배부 후 작성, 자필 서명

⑥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응시연령 상한연장 대상자**
- 당해 시험의 면접시행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⑦ 취업지원대상자 및 ⑧ 의사상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은 자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취업지원대상자) 또는 보건복지부(의사상자) 발행 증명서

《 개별 제출서류 》 항목별 해당자만 제출

⑨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 분야) 가산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앞·뒷면 인쇄)

- 필기시험 전일까지 소지하고 유효한 것.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분야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은 자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에 따른 자격증(면허증) 【붙임 9】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인정 불가

⑩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붙임 10】를 서식으로 제출하되 근무기관 자체서식이 【붙임 10】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자체서식으로 제출 가능

-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 제한분야 중 재직으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학위 또는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근무기간·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당해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재직 시 징계사항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징계사항 기재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 ※ **자동차운전 분야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운전 차종**」을 반드시 **상세로 기재(승차정원, 적재중량, 톤수 등)**하여야 하며, 미 기재된 서류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운전 차종은 최초 공고문(경기도 공고 제2020-240호)에 의한 “운전 실무경력 인정 범위” 만을 기재하여야 함.] **ex)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명 이상)**
-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전 교육 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육·해·공군 본부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1577-9090/국방민원콜센터로 문의)], 특수전임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하여야 함.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주 40시간에 준함)한 경력을 말함.
-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시)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2년 인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 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며, 복수의 간헐적 기간은 합산하여 1년(365일), 1월(30일) 단위로 계산함.

⑪ **최종학위(졸업) 증명서 1부.**

-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 제한분야 중 학위증명으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⑪-1 **유사학과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및 본인 졸업학교와 타 학교 비교 공문 각 1부.**

- 공고문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학과는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11】]** 1부 및 해당분야 전공과목 1/2 이상은 졸업연도 기준으로 응시자가 졸업한 학교와 타 학교(공고문에 명시된 학과)를 서로 비교한 공문(담당자명, 연락처, 직인 포함) 1부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⑫ **국가기술자격(면허)증 사본 1부.**(앞·뒷면 인쇄)

-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 제한분야 중 자격(면허)증으로 응시자격을 충족시키는 자
- 선박기관사의 경우 해기면허사항을 제출(면허증 최초 발급이력 포함)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인정 불가

⑬ **자력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 처벌내역 조회 확인서 중 아래 사항이 기재된 것 1부.**(군 경력이 포함된 자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 확인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부대),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계급별 임용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⑭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 경채분야에 한함)

※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⑮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⑯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경력기간 전체, 국세청 발급 1부.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은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로 해당기관의 직인이 포함된 경우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은 공적서류에 의하여 경력증빙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⑰ **폐업회사 경력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 근무기관(업체)의 해산(폐업) 등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부.
 - ↳ 【붙임 12】를 기준으로 제출하되 근무기관 자체서식이 【붙임 12】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자체서식으로 제출 가능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
 -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⑱ **근로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확인) 1부.**(해당자에 한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기간, 임금, 근무내역(부서 등),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 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 명시

《제출서류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는 서류접수 최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자에 한함)
 -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이외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클립 활용)
 - 공통서류와 응시분야별 개별서류는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연락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즉시 보완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가산점 입력사항과 상이하거나, 허위증명, 자격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응시자는 개별 통보 함.

붙임 8

서류접수(전형) 증빙서류 목록

※ 제출여부에 '○' 표기 후, 첫 장에 철하여 제출

성 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임용예정 시·도	임용예정 직급	채용구분
홍길동	12345678	소방(남)	경기도	소방사	공채/경채

순번	제출 서류	제출대상	제출 여부
【공통사항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1부.(상세로 발급).	공채/경채	○
2	운전경력증명서 1부.(전체 경력으로 발급)	공채/경채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앞·뒷면 인쇄)	공채/경채	
4	주민등록표 초본 1부.(상세 및 병적사항 기재 발급)	공채/경채	
5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서 1부.	공채/경채	
【해당자만 제출서류】			
6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응시연령 상한 연장대상자	
7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	해당자	
8	의사상자 등 증명서류 1부.	해당자	
9	가산특전 자격(면허)증 사본 1부.(앞·뒷면 인쇄)	공채	
10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경채	
11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경채	
1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채	
13	소득금액증명원 1부.	경채	
14	각 분야별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앞·뒷면 인쇄)	경채	
15	해기면허사항 1부.	선박기관사	
16	군 경력증명서 원본 1부.	구조	
17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 1부.	구조(해당자)	
18	징계사항 표기된 자력표, 병적증명서, 군부대경력증명서, 처벌내역조회 확인서 중 1부.	구조	
19	최종학력(학위) 증명서 1부.	학위응시자	
20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학위응시자	
21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앞·뒷면 인쇄)	자동차운전	
22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부.	폐업회사용	
2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근로계약서 작성자	

붙임 9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비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

분야 \ 가점비율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유의사항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각 분야 내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 **자격증 + 사무관리 = 합산, 0.5할(5%) 초과시 0.5할(5%)만 가점 인정**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각각 가점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 ~ 5%) 점수 가산

○ 필기시험 전일까지 최종합격(발급)되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증(면허증) 합격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

※ 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별표2)

직무분야 (26)	종직무분야 (61)	기술·기능 분야(51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14 건설 (6/98)	141 건축 (29)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거푸집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146 건설기계운전 (11)					
16 기계 (7/79)	162 기계장비설비 ·설치 (31)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승강기	기계정비 승강기	기계정비 승강기
				농업기계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전자부품장착
					생산자동화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타워크레인설치·해체
	163 철도 (5)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164 조선 (6)					동력기계정비 선체 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조선	조선	
	165 항공 (8)	항공기관		항공	항공	
		항공기체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166 자동차 (8)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그린전동자동차 정밀화학 화학		
18 화학 (2/12)	181 화공 (9)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182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직무분야 (26)	종직무분야 (61)	기술·기능 분야(51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20 전기전자 (2/39)	201 전기 (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광학
	202 전자 (23)			광학	광학기기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전자계산기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기기
		전자응용				
					3D프린터개발	전자캐드 3D프린터응용
				빅데이터분석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21 정보통신 (3/31)	211 정보기술 (15)					
				정보보안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212 방송·무선 (6)					
25 안전관리 (2/42)	251 안전관리 (27)	가스	통신설비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252 비파괴검사 (15)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26 환경에너지 (2/37)	262 에너지기상 (13)	기상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발전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붙임 10

경력(재직) 증명서

경력(재직) 증명서

기관 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예시)	근무 형태
					2010.12.25. ~ 2012.12.22.	
	총 근무기간		운전차종		자동차운전 분야만 기재 승차정원 적재중량 톤수 등 기재 ex)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명 이상)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확 인 자 1	확 인 자 2
부서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서 명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귀 사(근무기관) 자체서식이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자체서식으로 제출 가능**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기도소방학교 인재개발팀 (☎ 031-329-0321~5, 팩스 031-280-8513)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동 일 계 통 학 과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교연락처		응시자 연락처 (휴대폰)			
학교명		학과 (전공)		졸업 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에 기재된 _____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소속)	성명	(인)
	(직)		
	(전화)		

2020 . . .

○ ○ 대 학(교) 총장 (직인)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 12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00.00.00. ~ 00.00.00. (년 월)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붙임 폐업사실증명서 1부.

붙임 13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공채, 경채) 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기도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국세청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자격증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발급 기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여부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 성명, 주민번호, 보호번호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경기도에서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붙임 14

자가격리자 시험 신청서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자가격리자 시험 신청서

□ 성 명 : _____

□ 생년월일 : _____

□ 응시번호 : _____

□ 지원사항(분야/계급) : _____

□ 주 소 : _____

※ 시험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_____

○ 가족 등 : _____

○ 기 타 : _____

※ 인(적)성검사 및 서류접수(전형)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상기 본인은 자가격리자로서 2020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채용 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격리통지서 사본 1부.

신청일자 2020. . .

신 청 인 _____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 1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마스크 미착용 및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 응시 불가 ★★

▼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일 또는 시험장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수험생과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등록 및 종목별 측정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성 검사, 서류접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 확진환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별도장소 응시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